

상 고 이 유 서

사 건 2000도000호(2000감도000)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인 0 0 0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.

다 음

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과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.

1. 원심판단

원심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(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합니다)이 원심판시 범행을 저질렀고,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.

2. 재범의 위험성 등

가.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회수나 범행방법을 볼 때 어느 정도 메스 암페타민에 대한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나, 치료감호법 제2조에 규정된 치료감호 요건인 '재범의 위험성'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등의 주입 등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

- 나. 국립〇〇병원장 및 서울〇〇병원장 작성의 각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정신감정 당시 메스암페타민 남용이라고 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진단범주에 포함되는 정신과적 질환에 빠져 있다고 되어 있으나, 피고인이 이 사건 약물을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의와 상담을 해 왔고, 동종류의 전 범죄와의 시간적인 간격이 상당한 점들로 보아 이 사건 약물을 근절하려는 피고인의 의지가 강하고, 피고인에게는 가족으로 처와 자식이 있는점, 치료감호시설 외에서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특수한 교육개선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.
- 3. 이상의 이유로 상고이유를 개진하오니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처분을 내린 원심판 결을 파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2000. 0. 0.

상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○ ○ ○ (인)

대법원 형사제○부(○) 귀중

제출기관	상고법원 (형사소송법 379조)	제출기간	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사 영화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(형사소송법 379조1항)
제출의무자	※ 아래(1)참조	제출부수	상고이유서 및 부본 각1부
기 타	상고인이나 변호인이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고기각 결정을 함(형사소송법 380조)		

- ※ (1) 제출의무자(형사소송법 338, 340, 341조)
 - 1. 검사
 - 2. 피고인, 피고인의 법정대리인
 - 3. 피고인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,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